

[이행 후 계속]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사 업 명 (신규/자체사업) |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| | 관리번호 | 2-1 |
| | | | 완료시기 | 임기내 |
| 주관부서 (담당자, 전화) | 건강증진과, 가족보건담당 (손규원 ☎5761) | 협조부서 (담당자, 전화) | 市 건강정책과 (고민수 ☎888-3361) | |
| | | 추진상황(률) | 이행 후 계속(100%) | |
| 사업기간 | 2018년 ~ 2022년 (이행 후 계속추진) | 소요예산 | 215백만원 | |

【사업추진계획】

사업추진목표

-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
- ※ 당초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예정이었으나 여건변화, 효과 등 고려하여 산모조리비용지원으로 수혜대상 확대하여 추진

사업개요

- 근 거 :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(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)
- 기 간 : 2019. 하반기 ~ 2022. 12.
- 대 상 : 사하구 거주 6개월 이상 둘째자녀 출산 가정(산모)
 - ※ 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 국비지원 대상자 제외
- 사업내용 : 출산 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방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조로서비스 제공
- 추진방법 : 보건소 신청접수→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의뢰→건강관리사 파견
- 사 업 비 : 215백만원
 - ※ 2019년 사업비 : 214,338천원(구비 100%) ▷ 236명 × 906천원
 - ※ 2020년 이후 사업비 : 70,000천원(구비 100%) ▷ 첫째 87명 X 800천원

세부추진계획

- 2018. 11. :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 협의 요청
- 2019. 01. ~ 02. : 보건복지부 승인에 따른 사업 계획 수립
- 2019. 03. ~ 06. : 조례 제정 및 사업 홍보
- 2019. 07. ~ 12. : 2019년 사업 추진
- 2020. 03. : 조례 개정 및 2020년 사업계획 수립
- 2020. 04. ~ 12. : 2020년 사업 추진

연차별 추진계획

| 세부추진내용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20% | 100% | 100% | 100% | 100% |
|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| 보건복지부 협의 | 계획수립, 조례 제정, 사업추진 | 계획수립, 조례개정, 사업추진 | 사업추진 | 사업추진 |

【재원조달계획】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총사업비 | 기투자 | 계 | 민선7기 | | | | |
|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|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
| 계 | 215 | | 215 | | 215 | (70) | (70) | (70) |
| 국 비 | | | | | | | | |
| 시 비 | | | | | | | | |
| 구 비 | 215 | | 215 | | 215 | (70) | (70) | (70) |

※ 목표달성 이후 사업비는 총사업비 미포함

【추진실적】

- 사하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정(2019.05.17.)
- '19년 사하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자 수 : 29명/ 지급액 : 24,370천원
- 사하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개정(2020.04.10.)
('19년 둘째자녀 → '20년 첫째자녀 출산 가정으로 확대)
- '20. 11월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제공기관 지도 점검(6개소)
- '20년 사하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자 수 : 63명/ 지급액 : 40,857천원

【문제점 및 대책】

- 부산시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확대(소득관계 없이 둘째자녀 출산가정)
- 정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(기준중위소득 100% → 120%)
- ▣ 우리구 출산 장려를 위한 대상자 확대 필요로 소득에 관계없이 첫째자녀부터 지원

【금후계획】

- '21. 1월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평가 및 ' 21년 계획 수립

※ 2021년 연간추진계획

| 사업내용 | 사업비 (백만원) | 분기별 계획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| | 1/4 | 2/4 | 3/4 | 4/4 |
|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| (70) | 사업추진 | | | |

【구민소통 실적】

| 설명회, 보고회 등 | 만족도, 설문조사 | 민간전문가 자문 | 언론.방송 보도 | 기 타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| 1 | | 5회 | 25회 |

【기대효과】

- 사하구 출산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
- 모성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아이 키우기 참 좋은 사하 구현